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5조 [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]



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5조(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) · 조문 원문

①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, 부패하기 쉬운 물질 또는 악취가 나는 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을 수시로 세척하고 소독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세척 및 소독을 하는 경우에 물이나 그 밖의 액체를 다량으로 사용함으로써 습기가 찰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은 불침투성(不浸透性) 재료로 칠하고 배수(排水)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.

그림은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작업 시에는 법령과 현장 조건을 확인하세요.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조문 대조 2026. 10. 28.